
국내 리걸테크 규제 현황 및 과제 진행

2023. 6. 19. | 조원희 변호사

조원희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01~2017
- 한국과학기술원(KAIST)MIP 겸임교수
2013~
-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20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2019~
- (주)코메이크 대표이사
2018~

Contents

- 01 **국내 리걸테크 현황**
- 02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03 **코메이크 서비스 및 과제 현황**

Contents

01

국내 리걸테크 현황

- 국내 리걸테크 산업규모
- 서비스 영역별 기업 현황
- 서비스영역별 대표 기업

02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 리걸테크 관련 변호사법 충돌지점
-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별 법제한계
- '로톡' 사건 경위 및 주요쟁점

03

코메이크 서비스 및 과제 현황

- 코메이크 소개
- 정관 검토 서비스
- 과제 현황 및 Next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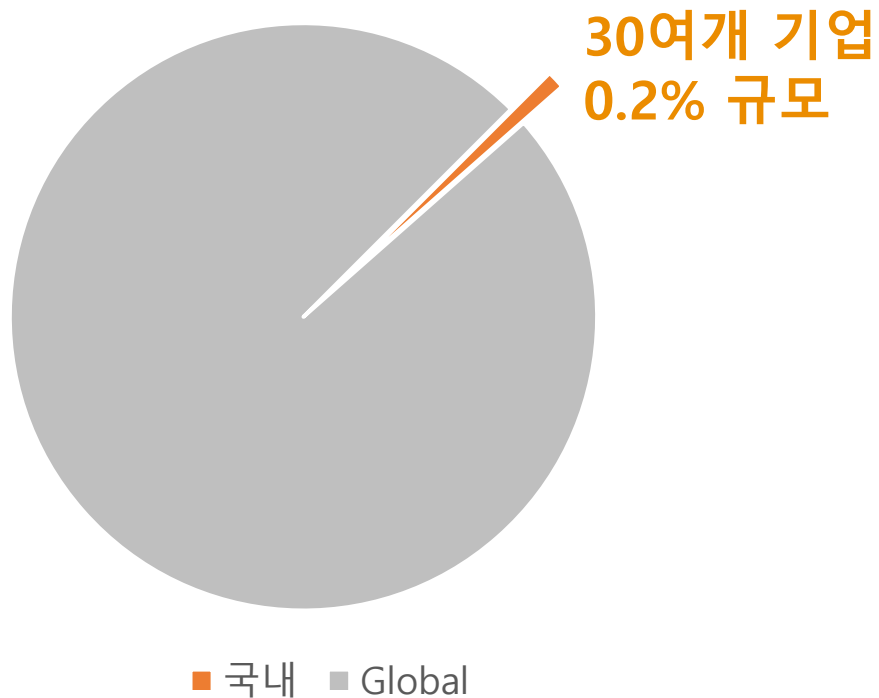
SESSION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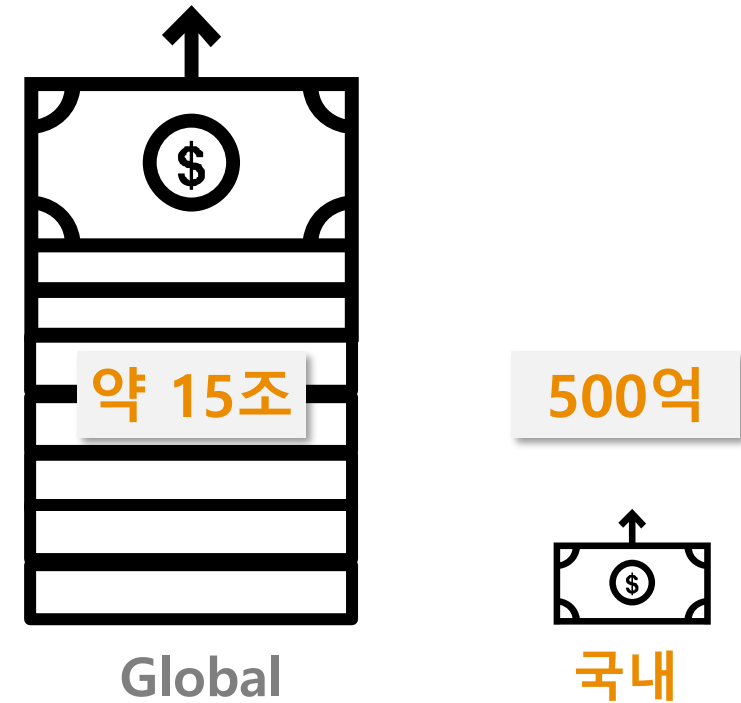
국내 리걸테크 현황



국내 리걸테크 산업규모



- 전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 7000개 (유니콘 기업 25개 이상) 대비 한국 리걸테크 기업 수는 31개 (0.2%규모 수준)에 불과 함



- 전세계 리걸테크 투자규모는 113억달러(14.9조)로 이중 48억달러(6.3조)는 최근 2년 투자규모임
- 한국 리걸테크 누적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 회사는 3곳 뿐임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별 기업 현황

대분류	소분류	서비스 기업(서비스 이름)
검색 (Searching)	변호사 검색(Legal marketplace)	로앤굿(로앤굿), 로앤컴퍼니(로톡), (주)변호사닷컴(변호사닷컴), 코리아플랫폼레볼루션(불후의변호사), 비온드코드(리톡), 화난사람들(화난사람들)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프론테오코리아(프론테오)
	법률정보 검색(Legal research)	까리용(리걸엔진), 리걸테크(리걸서치), 인텔리콘연구소(유렉스), 코딧(코딧), 엘박스(엘박스), 캣벨(캣벨), 케이스노트(케이스노트)
	법무 관리(Legal practice management)	솔루션업그레이드(로어드민), 더존비즈온(Wehago One), 로움아이티(세모장부), 베링랩(베링랩), 에이아이링고(오트란), 코드박스(주주리걸), 크럼스(등기케어), 헬프미(헬프미), 휴램프로(휴램), 세무통(세무통)
분석 (Analysis)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Legal analytics)	N/A
	계약서 검토 및 준법(Legal compliance)	인텔리콘(인텔리콘)
작성 (Writing)	법률문서 작성(Legal document automation)	고소하게(내용증명의힘), 보리움법률사무소(머니백), 글로핸즈(글로싸인), 모두싸인(모두싸인), 아미쿠스렉스(로폼), 코메이크(코메이크), 법틀(법틀)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N/A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별 대표기업 : 변호사 검색

lawtalk

회사명 (주)로앤컴퍼니

설립 및 서비스 개시 12년 설립
14년 서비스 개시

- 상세 서비스
- 이용자는 상세필터 적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변호사 검색 후 변호사 프로필 클릭하여 전화 영상 상담 등 예약
 - 변호사로부터 플랫폼 광고에 대한 대가로 정액의 비용을 지급받음

Law&Good

로앤굿

17년 설립
20년 서비스 개시

- 고객이 무료견적 신청하면,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제안서 무료로 발송
- 견적서 발송 변호사와 채팅 통한 무료상담 가능

변호사닷컴.

(주)변호사닷컴

12년 설립
15년 서비스 개시

- 이용자가 법률상담 게시글을 올리면, 변호사 회원이 상담 글에 답변
- 변호사 회원이 법률상담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는 정도에 따라 1~10위 순으로 노출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별 대표기업 : 법률 정보 검색

THOMSON REUTERS
LAWnB

CaseNote

LBox

회사명

톰슨로이터

(주)케이스노트

주식회사 엘박스

설립 및
서비스 개시

00년 설립
01년 서비스 개시

16년 베타서비스 개시
20년 설립
21년 정식서비스 개시

19년 설립
20년 서비스 개시

상세
서비스

- 확보 판례 건수 : 비공개
- 유무료 서비스 이원화
- 월10만3000원
- 판례검색사이트1세대
- 법률종합포털지향

- 확보 판례 건수 : 약 40만건
- 유무료 서비스 이원화
- 월4만2900원
- 사이트에 없는 판례 신청 시 신청일 익일 제공

- 확보 판례 건수 : 약 60만건
-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 제공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 영역별 대표기업 : 법률 문서 작성



회사명

아미쿠스렉스(주)

보리움법률사무소

주식회사 고소하게

설립 및
서비스 개시

15년 설립
19년 서비스 개시

18년 설립
19년 서비스 개시

19년 설립
29년 서비스 개시

상세
서비스

-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합의서, 위임장, 스타트업 필수문서에 대한 자동화된 문서작성 서비스 제공

-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 소송 신청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 샘플을 무료 제공
- 내용증명 샘플을 이용해 단 5분만에 내용증명을 작성
- 작성한 내용증명은 평생 보관

SESSION 01



리걸테크와 변호사법



리걸테크 관련 변호사법 충돌 지점 (1/3)

변호사법

• 제23조(광고)

-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쟁점

-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만으로 제한**
- 변호사소개플랫폼(예: 로톡)의 경우 운영법인(예: '로앤컴퍼니')이 운영 주체가 됨 → 변호사법에서 광고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등'에 변호사소개플랫폼 운영사(예: 로앤컴퍼니)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 소개나 광고 자체가 명백하게 불법일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리걸테크 관련 변호사법 충돌 지점 (2/3)

변호사법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쟁점

- 제34조는 '누구든지' 법률 사건·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이와 사건 중개, 알선 등 동업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함
- 현재 국내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해 가장 큰 논쟁이 벌어지는 지점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여부임.
-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이 없던 1973년 '사무장 로펌'을 막고자 만들어진 규제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변호사를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여러 차례 고발하고 있음
- 리걸테크 업체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사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본질적 걸림돌이 되고 있음

리걸테크 관련 변호사법 충돌 지점 (3/3)

변호사법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쟁점

- 제 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등을 금지
- 법률사무는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
- 로톡이 운영하는 '형량예측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한 것이라고 보아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여지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함. 이에 반해 로톡 측은 '형량예측 서비스는 과거 판결문을 바탕으로 통계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라 법률상담이 아니라는 주장

리걸테크 서비스 분야별 법적 한계

법률문서자동작성 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반 가능성**
 - 리걸테크 업체가 일반 소비자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여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 또는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이 "법률사무"에 해당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법 제 23조 위반 가능성**
 -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어떻게 광고하는가에 따라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제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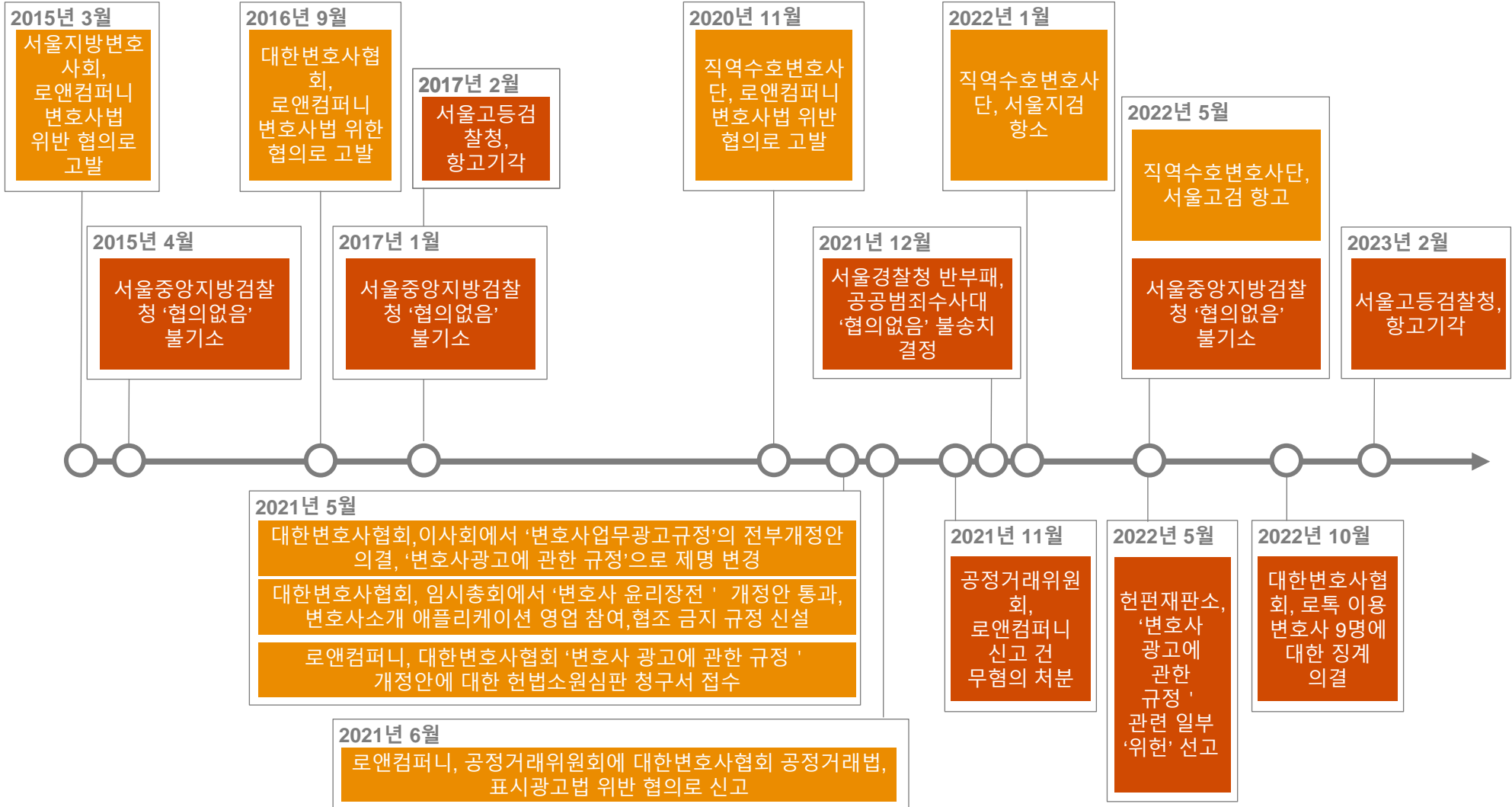
변호사소개 서비스 관련 법적 한계

- **변호사법 제 23조 위반 가능성**
 - 광고비를 지급한 변호사를 PREMIUM LAWYERS 등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형성할 우려 있음 (변호사법 제 23조 제2항 제3호)
 - 변호사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별점·후기가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오인되어, 소비자가 높은 별점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갖게 될 우려 있음(변호사법 제23조 제 2항 제3호)
 - 변호사에 대한 후기기능의 조작가능성으로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여부**
 - 변호사소개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 추천·소개 등 서비스가 변호사법 34조가 금지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로톡' 사건 경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경 판단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 관련 공정위 및 현재 판단



'로톡' 사건 주요 쟁점1

주요 쟁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여부
변호사가 로톡에 지불하는 비용이
특정기간 동안 플랫폼에 자신을
노출해 주는 대가 (代價)로 지불하
는 '광고비' 성격에 해당하는지, 특
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사
건 수임여부에 따라 지불하는 '중
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
는지, "중개형" 플랫폼에 해당하
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당사자 주장요지

로톡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
니다"고 주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으
로 포섭하기 어려운 신종 위법·탈법 광고행위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 법률
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알선·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
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수사기관 및 법무부의 판단

1) 검찰은 과거 두 차례('15년, '17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
고,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
사대는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

2)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이용자에
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 광고를 확인하고 상
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으
로 운영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고 판단

'로톡' 사건 주요 쟁점2

주요 쟁점

「제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여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통한 변호사 광고방법의 제한 및 징계 등 일련의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 2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당사자 주장요지

로톡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1호와 구성사업자(변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동법 제26조 1항 3호의 위반”을 주장

대한변호사협회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렵고, 설령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제58조)이 존재한다”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대한변협이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 만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 규정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고, 변호사 광고 규정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 발송

'로톡' 사건 주요 쟁점3

주요 쟁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여부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 즉, 사업자단체가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6조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당사자 주장요지

로톡

“사업자단체(대한변협)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7호)'의 경우, 대한변협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 발송

SESSION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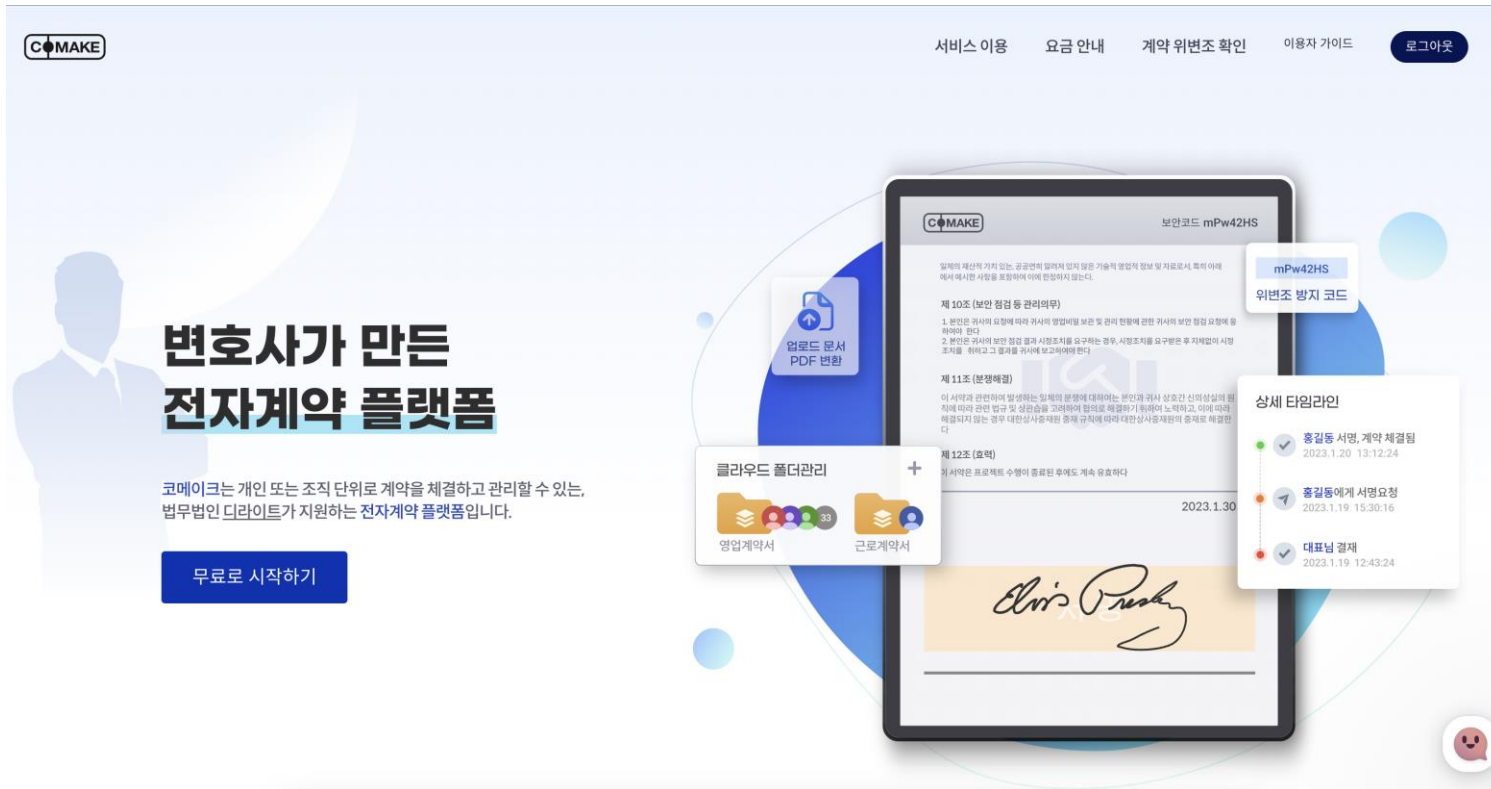


코메이크 정관 검토 서비스



코메이크 간략 소개

코메이크 3.0



작성



- 검증된 계약서 템플릿
- 기 작성 문서(word,hwp) 업로드
- 간편 서명 양식

검토



- Bert 기반 자동 검토 서비스
- ChatGPT 연동 문의 서비스 (준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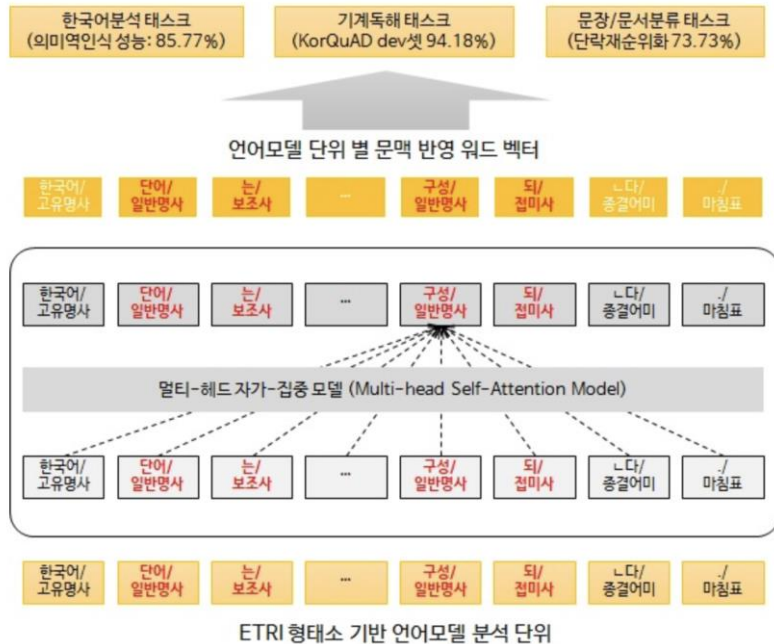
체결



- 블록체인 기반 계약 위변조 불가
- 전자 서명 시스템
- 스마트 컨트랙트 서비스 (준비중)

정관 검토 서비스 : Overview

KoBert (ETRI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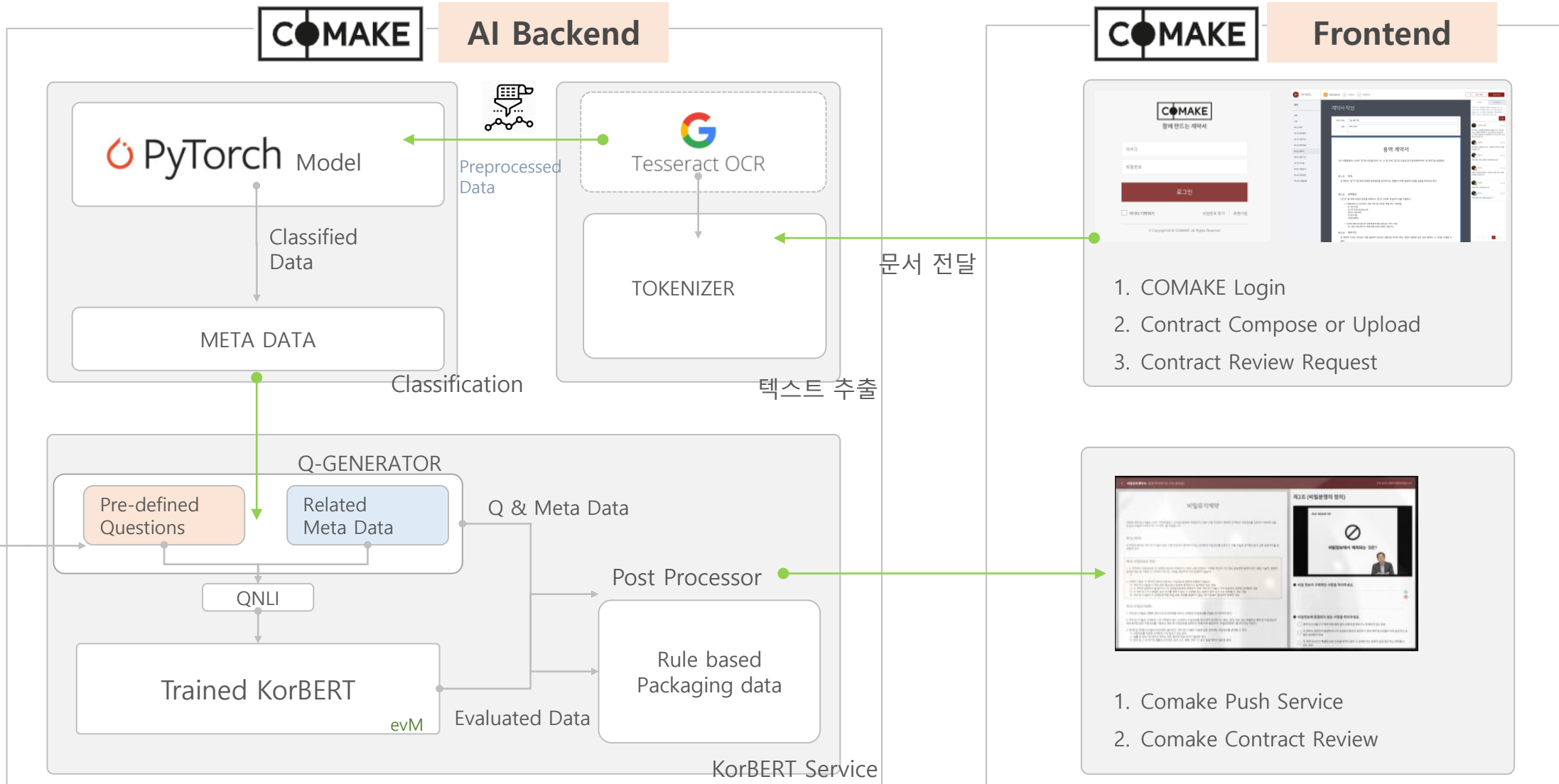


변호사 계약서 검토 형태

F	Facts	Determine the actual facts in the case. Answer who, what, when, where, and how.
I	Issues	What are the issues resulting from the case? What needs to be considered?
R	Rules and References	What rules are applied to the case? What other cases or events are used?
A	Analysis	Wha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facts, issues, and rules presented?
C	Conclusions	What conclusions were drawn and why?



정관 검토 서비스 : Architecture



정관 검토 서비스 : 실제 구현 화면

KoBert (ETRI 협업)

계약서 원문 분석 서비스

Term sheet

회사명 국민은행	회사의 사업목적 1.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무 2. 은행법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전기통신사업)
주소 <small>주소를 입력하십시오</small> 대표이사 이름 <small>대표이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small> 홈페이지 주소 <small>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십시오</small>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억주	1주의 금액(액면가) 5,000원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99,697,462주	회사의 본점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감사의 수 3인 이상	이사의 수 30인 이하
이사과 감사의 임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 도입 여부	관련 조항있음
향후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예정 여부	관련 조항있음
종류 주식(상환전환우선주 등) 발행 예정 여부	관련 조항있음

계약서 원문 분석

계약서 제목: 기술 제휴 계약
 설명: 계약서 개요

제 2조 근로자의 일반의무
 근로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조 주식 Score 99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격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조건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조 근로자의 일반의무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격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조건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제 5조 근로자의 일반의무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격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조건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 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분석결과

Score 99 ?

제 3조는 표준정관 vs 분석의뢰 정관 사이 유사성 측정도가 Score 99.9 로 완벽한 분석 결과

Confidence 95

이사회를 통한 이사의 선임은 상법 제 386조 3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Confidence 87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정족수는 보통결의(과반출석, 출석 주주 과반수지지)

Confidence 75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였음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합문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경고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6 규정을 준용한다. 차이

확인필요

'제 X장 xxx 제 Y조 yyy' 내용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나 귀사의 정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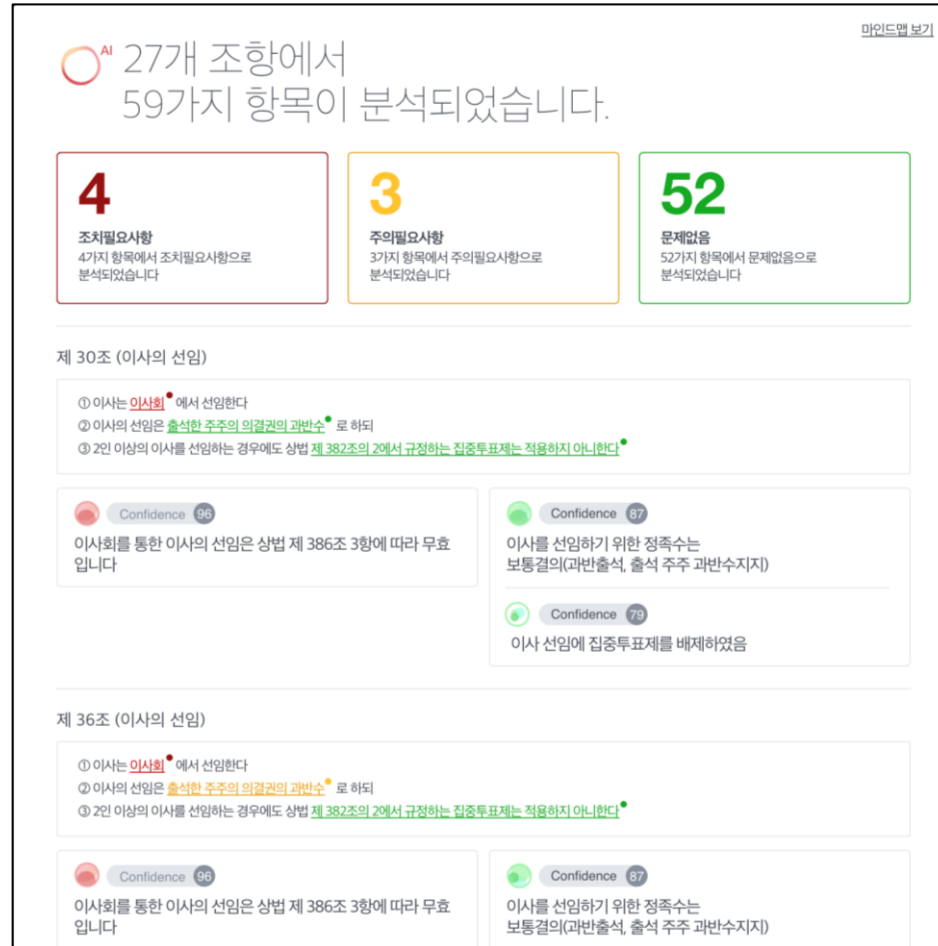
Left Only
Right Only

표준정관 해당 분석의뢰정관 해당

코멘트

정관 검토 서비스 : 실제 구현 화면

최종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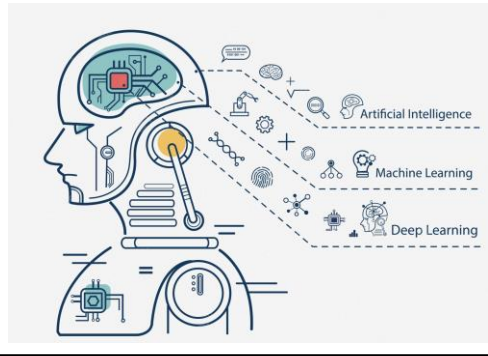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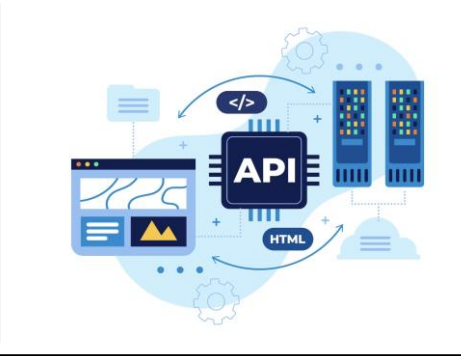
과제 현황 및 Next Step

목표 법률분야 LLM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계약서 검토 서비스 출시

주요 기능

- **계약서 문서 분석:** 계약서 내용을 해석하고 필수 사항을 추출
- **조건 및 조항 평가:** 각 조건 및 조항의 법적 위험성과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리스크 평가:**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결 방안 제시
- **비교 및 수정 제안:** 유사한 계약서와 비교하여 수정 제안을 제시

구축 절차

<p>업무 순서</p>				
<p>업무 내용</p>	<p>데이터 수집 : 다양한 계약서 데이터 수집 및 법적 규정 분석</p>	<p>LLM 학습 및 모델 개발: 법률분야에 특화된 LLM 학습 및 모델 개발.</p>	<p>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계약서 검토 시스템 개발 및 통합</p>	<p>테스트 및 평가: 서비스의 정확성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p>
<p>주관</p>	<p>법무법인 디라이트</p>	<p>서강대 XAI 연구실</p>	<p>서강대 XAI 연구실 코메이크(디라이트)</p>	<p>법무법인 디라이트, 코메이크</p>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whc@dlightlaw.com

www.dlightlaw.com
02 2051 1870